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89 호 2017. 9. 7(목)

고 시

제2017 - 9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1
제2017 - 9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지문~들물횃집)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
제2017 - 92호	남해군관리계획(미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1
제2017 - 93호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고시	20
제2017 - 94호	도로명주소 고시	30
제2017 - 96호	군계획시설(주차장:복곡주차장, 공원:이순신순국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2

공 고

제2017 - 830호	공시송달 공고	41
제2017 - 833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제2017 - 834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	48
제2017 - 835호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56
제2017 - 844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58
제2017 - 845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7
제2017 - 852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1
제2017 - 854호	공시송달 공고	87
제2017 - 862호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92
제2017 - 873호	남해군계획시설(오동저수지, 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95
제2017 - 887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8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9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m ²)	
계	3개소			17,200	
아산4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일원	붕괴위험	D	5,8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아산5	남해읍 아산리 201-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7,9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북변2	남해읍 아산리 산10-6번지 일원	붕괴위험	D	3,5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남해군 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남해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7. 8. 17.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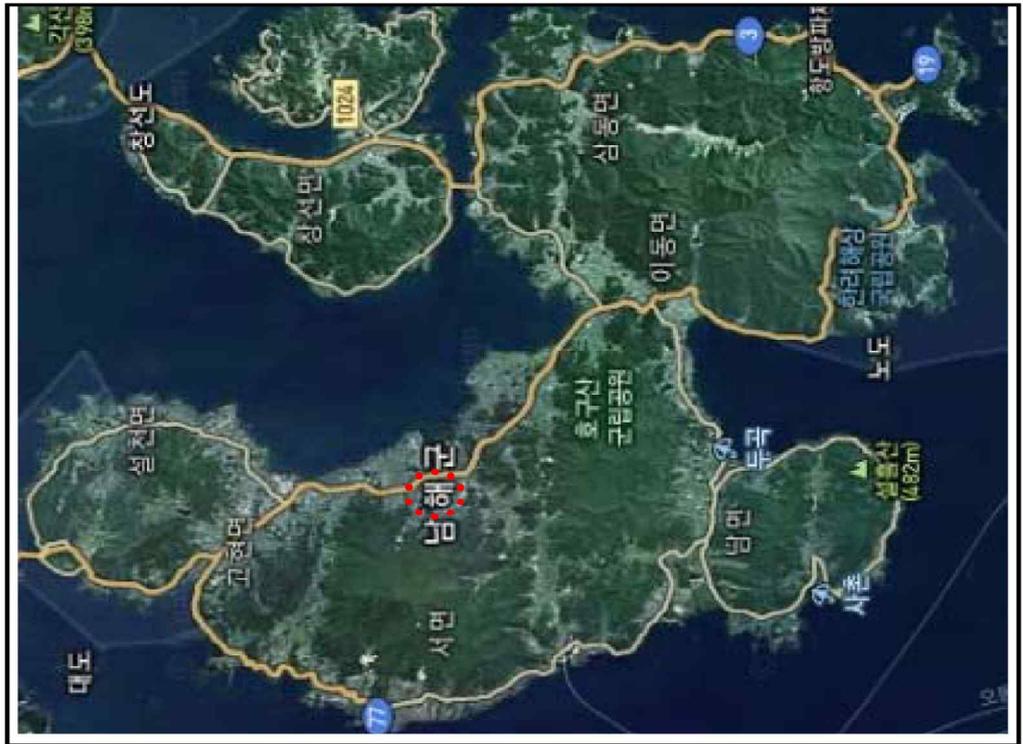
가.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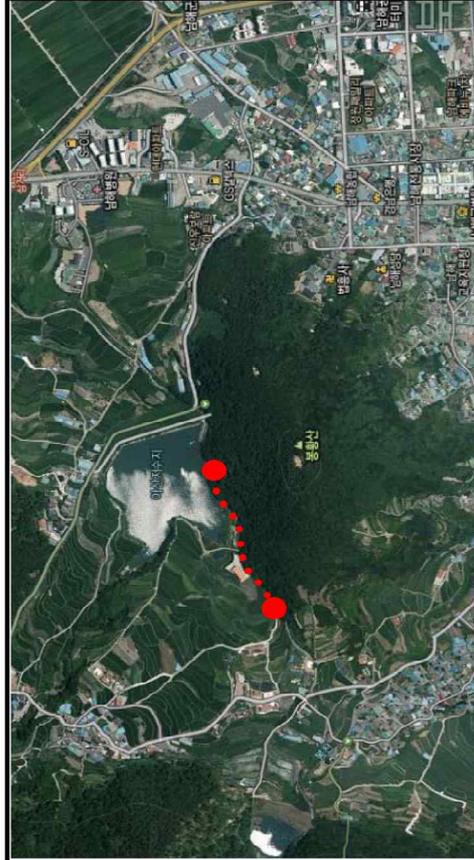
붙임 :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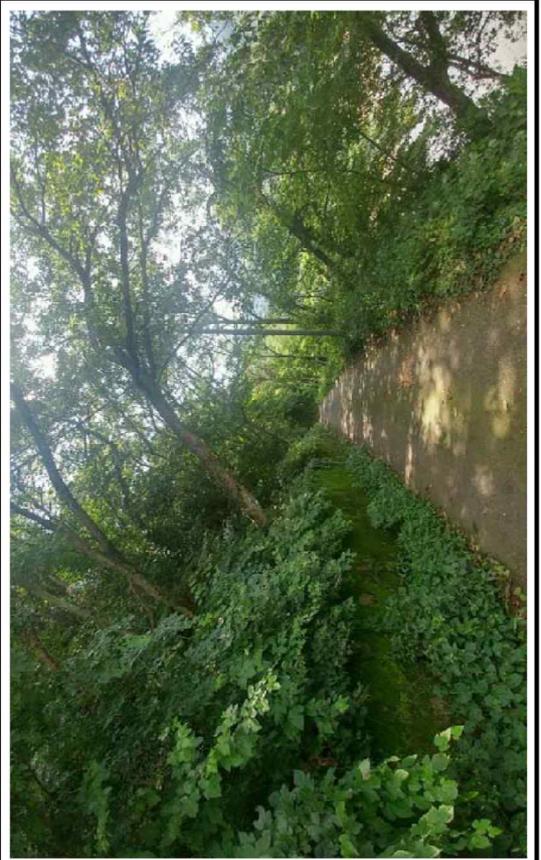
아산4지구 전체 위치도



아산4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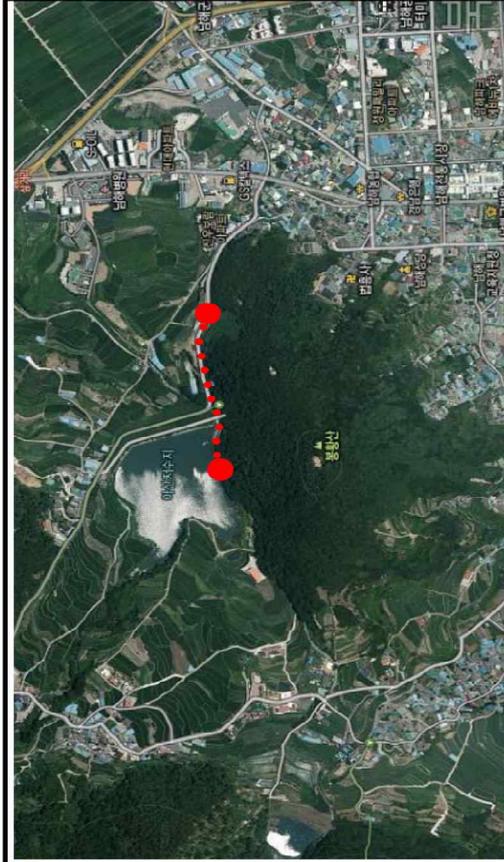


위성 위치도



현황도

아산5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04-1번지 일원)



위 성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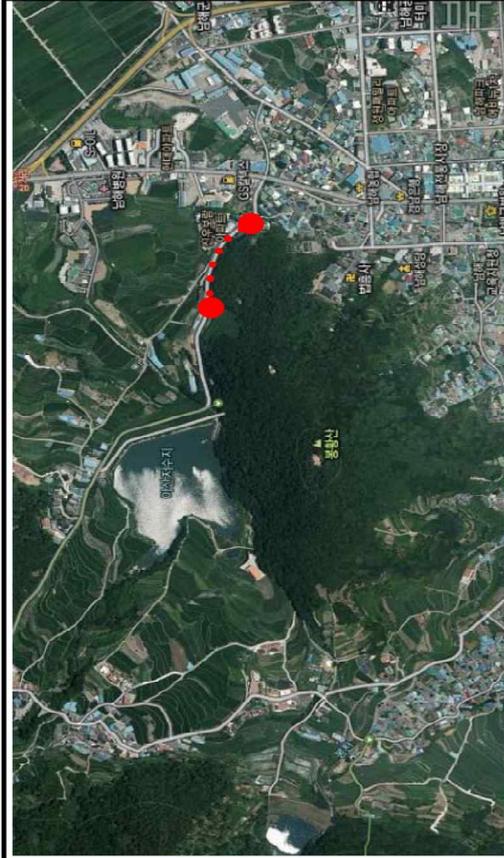


현 황 도

아산5지구 전체 위치도



북변2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산10-6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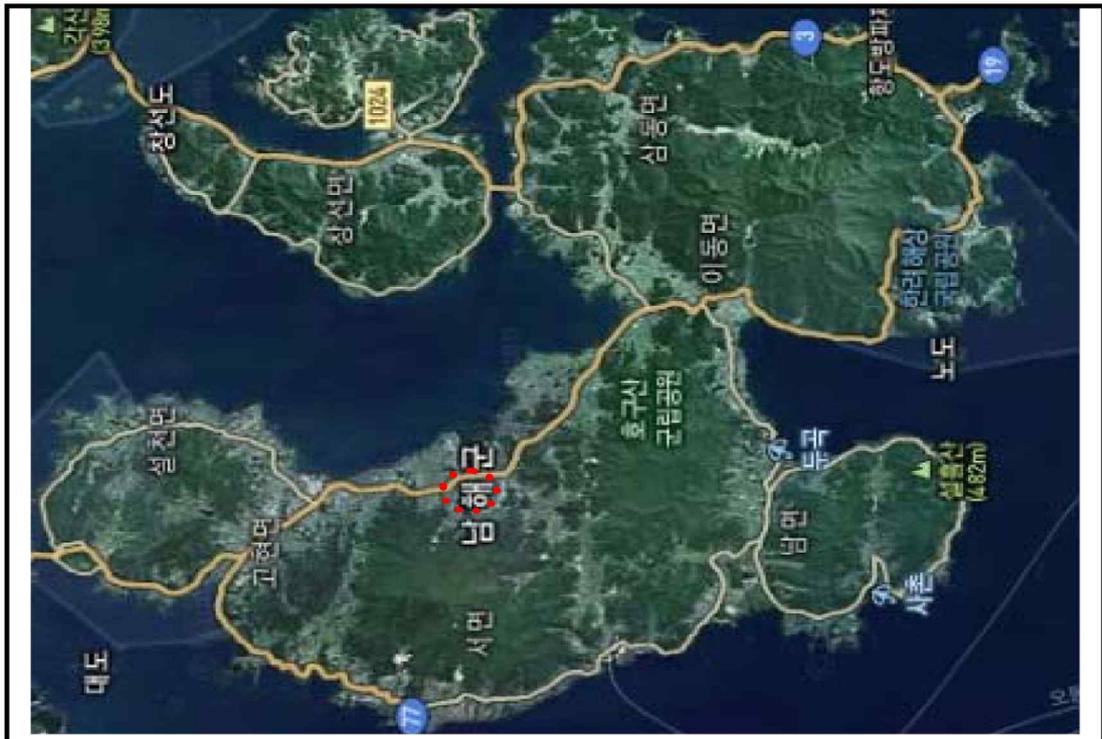


위성 위치도



현황도

북변2지구 전체 위치도



남해군 고시 제2017 - 9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 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결 정		금 회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m)	연장(m)	폭(m)	연장(m)	
중로	3	1	12	12	1,248	12	11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남 해 군 공 보

(8) 제 589 호

2017년 9월 7일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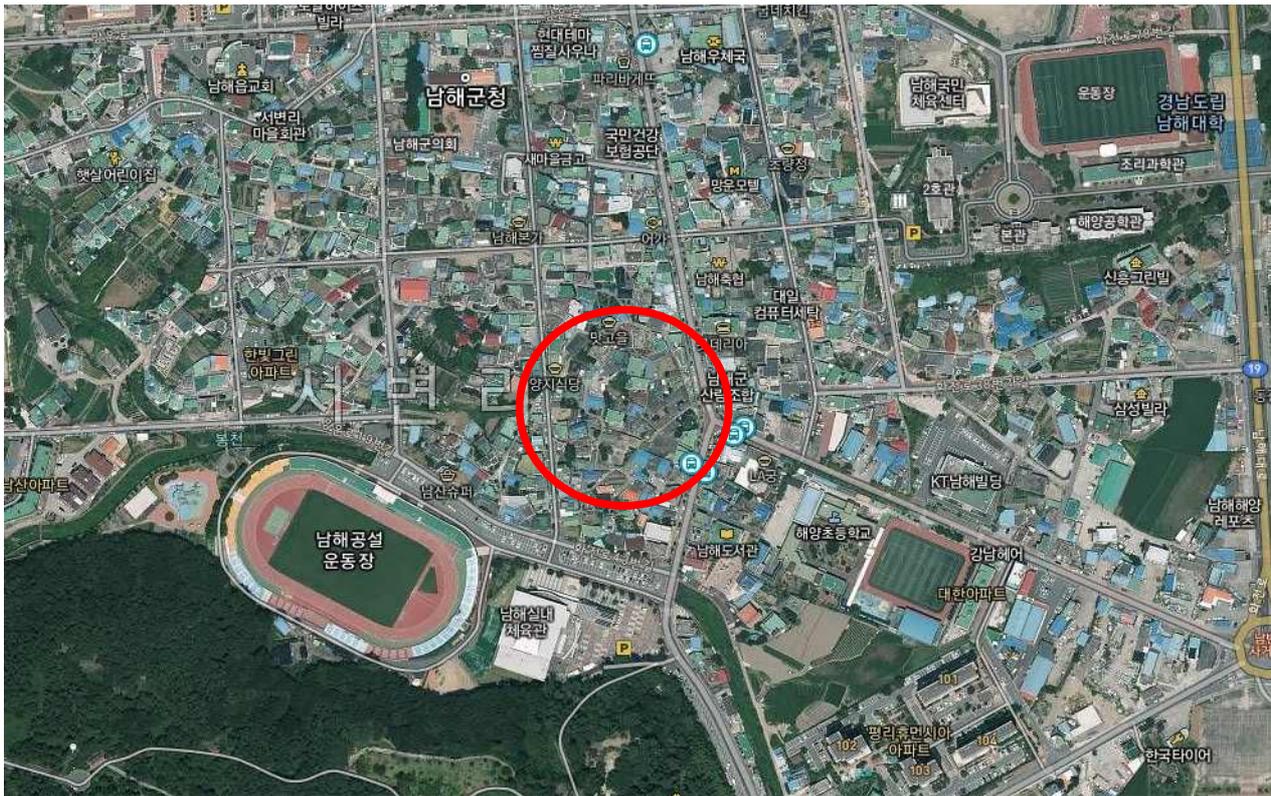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군 서변리	98-3	대	283	283		남해군	-	
2	"	490	도	6,089	71		기획재정부	-	
3	"	96-9	대	1	1	남해읍 서변리 96-4	하0주	-	
4	"	96-6	대	906	906		남해군	-	
5	"	124-4	대	24	24	남해읍 화전로 45-64	조0옥	근저당권 (남해군산림조합)	
6	"	146-3	대	13	13		남해군	-	
7	"	149-9	대	31	31	남해읍 서변리 149-6	노0남	-	
8	"	146-2	도	7	7	남해읍 서변동 173	정0협	-	
9	"	146-4	도	20	20	남해읍 서변동 146-3	유0조	-	
10	"	149-8	도	45	45	남해읍 서변리 149-6	하0순외 1인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01-5	주택	2층슬라브	m ²	102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11, 에이동 501호 (임페리얼빌리지)	전0남	
		에어콘		식	1		“	
		유선TV		식	1		“	
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24-2	주택	1층슬라브	m ²	90.5	남해읍 화전로 45-64	조0옥	
		보일러실	판넬조판넬	m ²	2		“	
		계단	콘크리트	식	1		“	
		계단 및 테라스 등	계단2곳 테라스등	식	1		“	
		물탱크	FRP	식	2		“	
		물탱크	콘크리트	식	1		“	
		담장	블럭조	m ²	40		“	
		종려나무	R25	주	1		“	
		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96-6	창고	블럭스레트		m ²	16
감나무	100년생			주	2	“		
4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49-9	점포(1층)	철근콘크리트조	m ²	28.09	남해읍 서변리 149-6	노0남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	m ²	28.09		“	
		창고(옥상)	블럭함석	m ²	6		“	
		계단(난간포함)	콘크리트	식	1		“	
		물탱크	FRP	식	1		“	
		영업권		식	1		“	

■ 위치도



■ 위성사진



남해군 고시 제2017 - 92호

남해군관리계획(미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미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7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1.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
2. 면 적 : 242,000m² → 245,184m² (증 : 3,184m²)
3. 남해군관리계획(미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미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미조 개발진흥지구	주거	미조면 미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42,000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변경	2	미조 개발진흥지구	주거	미조면 미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45,18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미조 개발진흥지구	○규모확대(증3,184m ²) A=242,000m ² → 245,184m ²	○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금회 개발진흥지구를 확장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미조면 미조리 일원	242,000	증)3,184	245,184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규모확대(증3,184m ²) A=242,000m ² → 245,184m ²	○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2,000	증)3,184	245,184	100.0	
주 거 용 지	110,387	증)4,610	114,997	46.9	
상 업 용 지	37,540	-	37,540	15.3	
녹 지 용 지	49,259	-	49,259	20.1	
공 공 시 설 용 지	44,814	감)1,426	43,388	17.7	
도로	26,755	증)109	26,864	11.0	
주차장	1,884	-	1,884	0.8	
초등학교	12,535	감)1,535	11,000	4.5	
면사무소	2,029	-	2,029	0.8	
파출소	559	-	559	0.2	
우체국	792	-	792	0.3	
보건지소	260	-	260	0.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 로	18	4,159	26,864	1	1,138	11,570	2	426	3,430	15	2,595	11,864

남 해 군 공 보

(14) 제 589 호

2017년 9월 7일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7	10	간선 도로	1,138	남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2	57	8	집산 도로	378	산152-6	140-2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2	58	8	집산 도로	48	170-32	산54-5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84	소2-58호선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88	105-9	632-4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1	4	국지 도로	54	소3-9호선	소3-13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106	835	100-10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3	4	국지 도로	346	832	834-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4	4	국지 도로	48	96-14	100-10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111	소1-6호선	소3-13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6	4	국지 도로	142	96-5	104-1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7	4	국지 도로	110	104-16	104-7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259	85-6	104-3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8	4	국지 도로	265	85-3	104-31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9	4	국지도로	71	104-12	104-28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20	4	국지도로	54	104-9	104-84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21	4	국지도로	342	839-1	639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22	4	국지도로	420	464-2	611-8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기정	소로	3	23	4	국지도로	54	632-6	638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8호선	소로3-18호선	○노선변경 -L = 259m → 265m	○현황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

②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미조면 미조리 102번지 일원	1,884	-	1,884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2)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미조 초등학교	초등학교	미조면 미조리 465-1학 일원	12,535	감)1,535	11,000	남해군고시 제2003-15호 (2009.02.05.)	

남 해 군 공 보

(16) 제 589 호

2017년 9월 7일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미조초등학교	○면적감소(감1,535㎡) A=12,535㎡ → 11,000㎡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변경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8	미조 면사무소	면사무소	미조면 미조리 104-19	2,029	남해군고시 제2003-15호 (2009.02.05.)	
기정	9	미조파출소	파출소	미조면 미조리 105-14	559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기정	10	미조우체국	우체국	미조면 미조리 102	792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01.25.)	
기정	11	미조보건지소	보건지소	미조면 미조리 104-75	260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01.2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110,387	증)4,610	114,997	I - 1	544대 일원	15,695	-	15,695	
				I - 2	604대 일원	3,038	증)44	3,082	
				I - 3	655대 일원	5,876	-	5,876	
				I - 4	587대 일원	7,517	증)1,491	9,008	
				I - 5	575대 일원	4,906	-	4,906	
				I - 6	370대 일원	6,485	-	6,485	
				I - 7	294대 일원	10,010	-	10,010	
				I - 8	77-9대 일원	7,437	-	7,437	
				I - 9	78대 일원	7,385	감)535	6,850	
				I - 10	154대 일원	10,669	-	10,669	
				I - 11	94-8대 일원	2,362	-	2,362	
				I - 12	168대 일원	24,301	증)426	24,727	
				I - 13	170-5대 일원	607	-	607	
				I - 14	168-21잡 일원	4,099	증)3,184	7,283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	37,540	II- 1	669대 일원	2,854	
		II- 2	632-19잡 일원	3,300	
		II- 3	105-7대 일원	3,681	
		II- 4	104-7대 일원	2,655	
		II- 5	104-2대 일원	326	
		II- 6	104-8대 일원	1,174	
		II- 7	104-9대 일원	1,494	
		II- 8	104-57대 일원	1,885	
		II- 9	104-11대 일원	2,125	
		II- 10	104-87대 일원	926	
		II- 11	104-78대 일원	997	
		II- 12	104-12대 일원	5,188	
		II- 13	100-27대 일원	1,691	
		II- 14	99-7대 일원	1,647	
		II- 15	98대 일원	1,132	
		II- 16	160대 일원	3,455	
		II- 17	161대 일원	1,749	
		II- 18	163-7대 일원	1,261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I	49,259	III- 1	529-1도 일원	3,249	-
		III- 2	539-3임 일원	13,027	-
		III- 3	116전 일원	24,720	-
		III- 4	107-2잡 일원	1,620	-
		III- 5	104-27도 일원	160	-
		III- 6	75-4제 일원	2,100	-
		III- 7	169전 일원	4,383	-

남 해 군 공 보

(18) 제 589 호

2017년 9월 7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 I-13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4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1 ~ II-18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 III-7	용 도	지정용도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해군 고시 제2017 - 93호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수렵장 설정고시

■수렵기간

2017. 11. 1 ~ 2018. 1. 31 *수렵금지기간 : 2017.12.31~2018.1.1(신정)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남해군 수렵장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300명
- 총 면 적 : 357.61km²(35,761ha)
 - 수렵장 설정면적 : 144.96km²(14,496ha)
 - 수렵장 제외면적 : 212.65km²(21,265ha)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 30.30km²
- 공원구역 : 77.42km²
- 군사시설보호구역 : 1km²
- 도시지역 : 11.71km²
- 문화재보호구역 : 0.43km²
- 자연휴양림,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27km²
- 기타지역 : 89.52km²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번호
중앙지구대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30	055-863-2112
남면파출소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4	055-862-8112
창선파출소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99	055-867-1112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남해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055)
남해군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860-3254
남해읍사무소	남해읍 화전로 81	860-8034
이동면사무소	이동면 무림로 76	860-8084
상주면사무소	상주면 남해대로 705	860-8104
삼동면사무소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길 12	860-8183
미조면사무소	미조면 미송로 60	860-8234
남면사무소	남면 남서대로 778	860-8254
서면사무소	서면 스포츠로 676	860-8333
고현면사무소	고현면 탐동로 42	860-8363
설천면사무소	설천면 설천로 695	860-8432
창선면사무소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860-8455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엽기 개시일부터 15일 경과후에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단위 : 천원)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92일)	수용 인원
1종 수렵면허	적 색 포 획 승 인 권		50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 돼 지	4개(마리)	90명
		고 라 니	2개(마리)	
조류 1종	20개(마리)			
1종,2종 수렵면허	청 색 포 획 승 인 권		20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 라 니	1개(마리) 35개(마리)	210명
		조류 1종		
수 용 인 원 합 계				

*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7. 9. 19.(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7. 9. 28.(목)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7. 9. 19.(화)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7. 9. 28.(목)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7. 9. 28일 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17-5868-21 (9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군 적색)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17-5870-81 (21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군 청색)

※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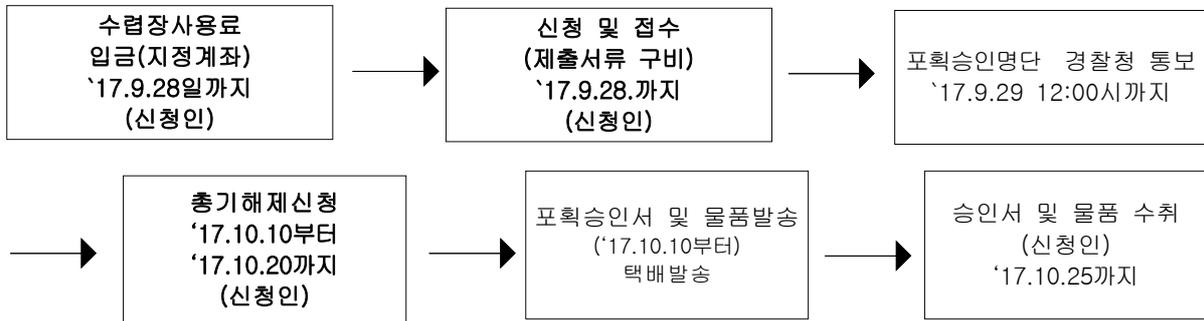
■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7. 9. 19일(화) 09:00시부터 2017. 9. 28일(목)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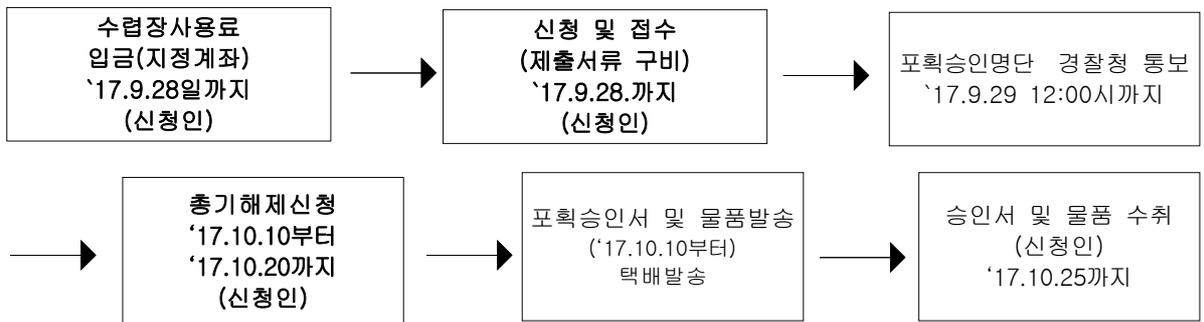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남해군 홈페이지)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55-733-3386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55-733-3396

②연 락 처 : Tel) 055-759-2626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7.10.20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7.10.20(금)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7. 9. 29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예: 남해군, 충주시, 의성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 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남해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증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증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증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증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증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함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증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포획증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증인 취소 등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증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증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건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 사고의 방지)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수렵이 종료되면 남해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남해경찰서의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7 - 9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492 외 37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7일

제 589 호 (31)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용소리 산141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서대로 375-4 (게스트하우스 켄)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직장리 16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35-2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곱솔리 3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49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20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11-58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82-7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347-73	20090427	내선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치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8-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81-5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진목리 신271-1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살천로 176-195	20090427	살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훈이리 550-3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살천로 761-1	20090427	살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36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소포초로 132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소포차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0-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4-7	20090427	행창리를 이룸,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오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0-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4-11	20090427	행창리를 이룸,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오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74-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67	20090427	창선면의 서북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45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41-36	20090427	창선면의 서북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금음리 1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강진로438번길 60-26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삼가리 337-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고실로2번길 13-1	20091023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859, 산433-4, 산432-24, 1853-17, 1853-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378번길 24-16	20090427	금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338-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연로202번길 50-16	20090427	남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다정리 1138-5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해대로2431번길 80-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6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09번길 33 30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6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13	2009102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5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24-23	201008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75-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42-8	20090427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35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2번길 31	20091023	미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92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303번길 14	20091023	미승로303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49-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118번길 29	2009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4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118번길 31	2009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866-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삼봉로73번길 52	20090427	삼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1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60번길 49	20091023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1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280번길 26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65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9-43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1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694번길 12-9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신진리 485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상남로78번길 51	20091023	상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화리 123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소포초로264번길 24-13	20090427	소포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4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33번길 73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497-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33번길 73-1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화리 80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화로173번길 15-72	20091023	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41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96번길 51	20100815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0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1208번길 84	20090427	홍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7 - 96호

군계획시설(주차장:복곡주차장, 공원:이순신순국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주차장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8 일원
- 2) 공 원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주차장
 -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복곡 3주차장 조성
- 2) 공원
 - 종 류 : 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사업
 - 명 칭 :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주차장

○ 면 적 : 3,677m² → 3,720m²(증 43m²)

2) 공원

○ 면 적 : 89,869m² → 89,401m²(감 468m²)

구분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당초	변경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89,869	89,401	100.0	1,552.05	1,951.44	1,652.82	2,024.35	
교양시설	43,206	43,123	48.3	414.95	803.52	466.73	829.75	
휴양시설	4,518	4,680	5.3	-	-	-	-	
편의시설	26,915	26,578	29.7	1,137.10	1,139.05	1,186.09	1,187.83	
조경시설	15,230	15,020	16.7	-	8.87	-	6.7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주차장

○ 성 명 : 환경부장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 공원

○ 성 명: 남해군수

○ 주 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주차장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공원

○ 착수예정일 : 2012년 02월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년 12월 31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주차장 - 붙임1 참조

○ 공 원 - 붙임2 참조

7.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3 참조

[붙임1] 주차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3,677	3,677					
1	이동면 신전리	산118	13	임	2,579	2,57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2	이동면 신전리	1	5	답	209	20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3	이동면 신전리	1	3	답	889	88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3,720	3,720					
1	이동면 신전리	1	8	차	3,720	3,720	환경부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7일

제 589 호 (35)

[붙임2] 공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1,326	89,401	89,869	89,401					
1	고현면	차면리	0-1	0-1	가	가	55	55	55	55	국토교통부	국			
2	고현면	차면리	113	113	답	답	737	737	737	737	남해군	공			
3	고현면	차면리	650	650-1	전	전	486	158	157	158	남해군	공			
4	고현면	차면리	651	651	전	전	387	387	387	387	남해군	공			
5	고현면	차면리	651-1	651-1	전	전	869	869	869	869	남해군	공			
6	고현면	차면리	651-2	651-2	전	전	1,421	1,421	1,421	1,421	남해군	공			
7	고현면	차면리	651-3	651-4	전	전	906	517	517	517	남해군	공			
8	고현면	차면리	652	652-1	전	전	469	176	175	176	남해군	공			
9	고현면	차면리	653-1	653-1	답	답	701	701	701	701	남해군	공			
10	고현면	차면리	653-2	653-2	도	도	112	112	112	112	남해군	공			
11	고현면	차면리	654-1	654-1	답	답	198	198	198	198	남해군	공			
12	고현면	차면리	654-2	654-2	답	답	205	205	205	205	남해군	공			
13	고현면	차면리	655-1	655-1	답	답	800	800	800	800	남해군	공			
14	고현면	차면리	655-2	655-2	도	도	13	13	13	13	남해군	공			
15	고현면	차면리	656-2	656-2	도	도	86	86	86	86	남해군	공			
16	고현면	차면리	656-1	656-3	답	답	1,183	1,172	1,171	1,172	남해군	공			
17	고현면	차면리	658	658	답	답	290	262	290	262	남해군	공			
18	고현면	차면리	659	659	답	답	1,729	1,715	1,729	1,715	남해군	공			
19	고현면	차면리	660-1	660-1	답	답	291	291	291	291	남해군	공			
20	고현면	차면리	660-2	660-2	답	답	179	179	179	179	남해군	공			
21	고현면	차면리	660-3	660-3	답	답	426	426	426	426	남해군	공			
22	고현면	차면리		662-7		답		33		33	남해군	공			
23	고현면	차면리	688-2	688-3	답	답	1,035	801	801	801	남해군	공			
24	고현면	차면리	689-1	689-1	도	도	7	7	7	7	남해군	공			
25	고현면	차면리	689-2	689-2	답	답	1,197	1,197	1,197	1,197	남해군	공			
26	고현면	차면리	690	690	답	답	711	711	711	711	남해군	공			
27	고현면	차면리	691-1	691-1	도	도	79	79	79	79	남해군	공			
28	고현면	차면리	691-2	691-2	답	답	1,623	1,623	1,623	1,623	남해군	공			
29	고현면	차면리	692-1	692-1	답	답	638	638	638	638	남해군	공			
30	고현면	차면리	692-2	692-2	답	답	648	648	648	648	남해군	공			
31	고현면	차면리	692-3	692-3	도	도	76	76	76	76	남해군	공			
32	고현면	차면리	692-4	692-4	도	도	93	93	93	93	남해군	공			
33	고현면	차면리	692-5	692-5	답	답	20	20	20	20	남해군	공			
34	고현면	차면리	693	693	답	답	132	132	132	132	남해군	공			

남 해 군 공 보

(36) 제 589 호

2017년 9월 7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5	고현면	차면리	694-1	694-1	답	답	840	840	840	840	남해군	공			
36	고현면	차면리	694-2	694-2	답	답	618	618	618	618	남해군	공			
37	고현면	차면리	694-3	694-3	도	도	36	36	36	36	남해군	공			
38	고현면	차면리	695	695	답	답	783	783	783	783	남해군	공			
39	고현면	차면리	696-1	696-1	답	답	932	932	932	932	남해군	공			
40	고현면	차면리	696-2	696-2	답	답	615	615	615	615	남해군	공			
41	고현면	차면리	697	697	답	답	721	721	721	721	남해군	공			
42	고현면	차면리	698	698	답	답	615	615	615	615	남해군	공			
43	고현면	차면리	698-1	698-1	답	답	106	106	106	106	남해군	공			
44	고현면	차면리	699-1	699-1	답	답	143	143	143	143	남해군	공			
45	고현면	차면리	710-1	710-1	답	답	395	395	395	395	남해군	공			
46	고현면	차면리	711	711	답	답	75	46	75	46	남해군	공			
47	고현면	차면리	712-2	712-2	답	답	139	11	80	11	남해군	공			
48	고현면	차면리	713	713	답	답	100	23	100	23	남해군	공			
49	고현면	차면리	714	714	답	답	284	284	284	284	남해군	공			
50	고현면	차면리	714-1	714-1	전	전	251	251	251	251	남해군	공			
51	고현면	차면리	715	715	답	답	1,064	1,064	1,064	1,064	남해군	공			
52	고현면	차면리	716	716	답	답	727	727	727	727	남해군	공			
53	고현면	차면리	717	717	답	답	704	704	704	704	남해군	공			
54	고현면	차면리	718	718	답	답	975	975	975	975	남해군	공			
55	고현면	차면리	719	719	답	답	1,296	1,296	1,296	1,296	남해군	공			
56	고현면	차면리	720-1	720-1	답	답	512	512	512	512	남해군	공			
57	고현면	차면리	720-2	720-2	답	답	479	479	479	479	남해군	공			
58	고현면	차면리	720-3	720-3	도	도	23	23	23	23	남해군	공			
59	고현면	차면리	721	721	답	답	803	803	803	803	남해군	공			
60	고현면	차면리	722	722	답	답	932	932	932	932	남해군	공			
61	고현면	차면리	723	723	답	답	2,770	2,770	2,770	2,770	남해군	공			
62	고현면	차면리	723-1	723-1	답	답	1,888	1,888	1,888	1,888	남해군	공			
63	고현면	차면리	723-2	723-2	전	전	241	241	241	241	남해군	공			
64	고현면	차면리	724	724	도	도	109	109	109	109	남해군	공			
65	고현면	차면리	724-1	724-1	답	답	612	612	612	612	남해군	공			
66	고현면	차면리	724-2	724-2	답	답	2,307	2,307	2,307	2,307	남해군	공			
67	고현면	차면리	724-3	724-3	답	답	1,588	1,588	1,588	1,588	남해군	공			
68	고현면	차면리	724-4	724-4	도	도	48	48	48	48	남해군	공			
69	고현면	차면리	724-5	724-5	답	답	443	443	443	443	남해군	공			
70	고현면	차면리	724-6	724-6	유	유	253	253	253	253	기획재정부	국			
71	고현면	차면리	724-7	724-7	제	제	576	576	576	576	기획재정부	국			
72	고현면	차면리	724-8	724-8	창	창	111	111	111	111	남해군	공			
73	고현면	차면리	725-1	725-1	답	답	836	836	836	836	남해군	공			
74	고현면	차면리	725-2	725-2	도	도	119	119	119	119	남해군	공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7일

제 589 호 (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5	고현면	차면리	726	726	답	답	221	221	221	221	남해군	공			
76	고현면	차면리	727	727	전	전	291	291	291	291	남해군	공			
77	고현면	차면리	728	728	전	전	63	63	63	63	남해군	공			
78	고현면	차면리	729	729	전	전	159	159	159	159	남해군	공			
79	고현면	차면리	730	730	전	전	139	139	139	139	남해군	공			
80	고현면	차면리	731	731	전	전	241	241	241	241	남해군	공			
81	고현면	차면리	732	732	전	전	122	122	122	122	남해군	공			
82	고현면	차면리	733-1	733-1	전	전	126	126	126	126	남해군	공			
83	고현면	차면리	733-2	733-2	전	전	132	132	132	132	남해군	공			
84	고현면	차면리	734	734	전	전	374	374	374	374	남해군	공			
85	고현면	차면리	735	735	전	전	281	281	281	281	남해군	공			
86	고현면	차면리	736	736	전	전	360	360	360	360	남해군	공			
87	고현면	차면리	737	737-1	임	임	33	7	7	7	남해군	공			
88	고현면	차면리	738	738	전	전	350	350	350	350	남해군	공			
89	고현면	차면리	739-1	739-1	전	전	162	162	162	162	남해군	공			
90	고현면	차면리	739-2	739-2	전	전	965	965	965	965	남해군	공			
91	고현면	차면리	740	740	임	임	96	96	96	96	남해군	공			
92	고현면	차면리	741	741-1	전	전	621	478	481	478	남해군	공			
93	고현면	차면리	742	742	전	전	830	830	830	830	남해군	공			
94	고현면	차면리	743	743	전	전	646	646	646	646	남해군	공			
95	고현면	차면리	743-1	743-1	도	도	48	48	48	48	남해군	공			
96	고현면	차면리	744	744-1	전	전	423	396	409	396	남해군	공			
97	고현면	차면리	745-3	745-3	도	도	316	316	316	316	남해군	공			
98	고현면	차면리	745-4	745-4	도	도	63	63	63	63	남해군	공			
99	고현면	차면리	745-1	745-6	임	임	2,338	1,359	1,357	1,359	남해군	공			
100	고현면	차면리	745-2	745-7	전	전	387	122	123	122	남해군	공			
101	고현면	차면리	745-5	745-8	임	임	284	140	135	140	기획재정부	국			
102	고현면	차면리	746	746	답	답	213	213	213	213	남해군	공			
103	고현면	차면리	746-1	746-1	도	도	18	18	18	18	남해군	공			
104	고현면	차면리	747	747	답	답	77	77	77	77	남해군	공			
105	고현면	차면리	747-1	747-1	도	도	9	9	9	9	남해군	공			
106	고현면	차면리	748	748	전	전	55	55	55	55	남해군	공			
107	고현면	차면리	748-1	748-1	도	도	8	8	8	8	남해군	공			
108	고현면	차면리	749	749	잡	잡	67	67	67	67	남해군	공			
109	고현면	차면리	749-1	749-1	도	도	164	164	164	164	남해군	공			
110	고현면	차면리	750	750	전	전	66	66	66	66	남해군	공			
111	고현면	차면리	751	751-1	전	전	218	36	36	36	남해군	공			
112	고현면	차면리	805-7	805-12	도	도	6,732	284	286	284	기획재정부	국			
113	고현면	차면리	809-4	809-4	구	구	1,634	1,606	1,634	1,606	기획재정부	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14	고현면	차면리	816	816-4	구	구	2,853	1,172	1,172	1,172	기획 재정부	국			
115	고현면	차면리	822	822-1	도	도	1,643	211	211	211	기획 재정부	국			
116	고현면	차면리	833	833	도	도	221	221	221	221	기획 재정부	국			
117	고현면	차면리	834	834-1	구	구	598	469	469	469	기획 재정부	국			
118	고현면	차면리	835	835	제	제	169	169	169	169	기획 재정부	국			
119	고현면	차면리	835-1	835-1	도	도	230	230	230	230	남해군	공			
120	고현면	차면리	835-6	835-10	도	도	31	9	8	9	남해군	공			
121	고현면	차면리	835-2	835-2	잡	잡	74	74	74	74	남해군	공			
122	고현면	차면리	835-3	835-3	구	구	82	82	82	82	남해군	공			
123	고현면	차면리	835-4	835-4	도	도	81	81	81	81	남해군	공			
124	고현면	차면리	835-5	835-5	도	도	232	232	232	232	남해군	공			
125	고현면	차면리	산10	산10	임	임	298	298	298	298	남해군	공			
126	고현면	차면리	산7-6	산7-6	임	임	573	573	573	573	남해군	공			
127	고현면	차면리	산7-7	산7-7	임	임	102	102	102	102	남해군	공			
128	고현면	차면리	산8	산8-1	임	임	694	83	89	83	남해군	공			
129	고현면	차면리	산9-2	산9-10	임	임	694	318	277	318	남해군	공			
130	고현면	차면리	산9-5	산9-5	임	임	1,289	1,289	1,289	1,289	남해군	공			
131	고현면	차면리	산9-1	산9-9	임	임	7,934	1,286	1,299	1,286	남해군	공			
132	고현면	차면리	85	85	답	답	915	915	915	915	남해군	공			
133	고현면	차면리	85-5	85-5	답	답	57	57	57	57	남해군	공			
134	고현면	차면리	86-1	86-1	답	답	830	830	830	830	남해군	공			
135	고현면	차면리	86-2	86-2	답	답	2,112	2,112	2,112	2,112	남해군	공			
136	고현면	차면리	87	87	답	답	1,084	1,084	1,084	1,084	남해군	공			
138	고현면	차면리	88	88	답	답	684	684	684	684	남해군	공			
139	고현면	차면리	88-1	88-1	답	답	99	99	99	99	남해군	공			
141	고현면	차면리	88-2	88-2	답	답	4,532	4,532	4,532	4,532	남해군	공			
143	고현면	차면리	88-4	88-4	제	제	522	522	522	522	기획 재정부	국			
145	고현면	차면리	88-5	88-5	전	전	60	60	60	60	기획 재정부	국			
146	고현면	차면리	88-6	88-6	임	임	63	63	63	63	기획 재정부	국			
147	고현면	차면리	89	89	답	답	843	843	843	843	남해군	공			
148	고현면	차면리	89-1	89-1	답	답	3,230	3,230	3,230	3,230	남해군	공			
149	고현면	차면리	90	90	답	답	31	31	31	31	남해군	공			
151	고현면	차면리	96-5	96-5	답	답	323	323	323	323	남해군	공			
152	고현면	차면리	96-6	96-6	답	답	58	58	58	58	남해군	공			
153	고현면	차면리	97	97	답	답	2,995	2,995	2,995	2,995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5	고현면	차면리	98	98-1	답	답	1,296	1,293	1,288	1,293	남해군	공			
157	고현면	차면리	99	99	답	답	156	156	156	156	남해군	공			
158	고현면	차면리	99-2	99-2	답	답	110	110	110	110	남해군	공			
159	고현면	차면리	103-2	103-2	답	답	152	152	152	152	남해군	공			
162	고현면	차면리	103-3		답		879			2	국토 교통부	국			제척
163	고현면	차면리	104	104	답	답	709	709	709	709	남해군	공			
165	고현면	차면리	104-1	104-1	답	답	284	284	284	284	남해군	공			
166	고현면	차면리	104-2	104-2	답	답	957	957	957	957	남해군	공			
169	고현면	차면리	104-3	104-3	답	답	294	294	294	294	남해군	공			
171	고현면	차면리	104-4	104-4	답	답	1,794	1,794	1,794	1,794	남해군	공			
173	고현면	차면리	104-5	104-5	답	답	451	451	451	451	남해군	공			
174	고현면	차면리	104-6	104-6	답	답	110	110	110	110	남해군	공			
175	고현면	차면리	104-7	104-7	답	답	1,290	1,290	1,290	1,290	남해군	공			
176	고현면	차면리	104-8	104-8	답	답	7	7	7	7	남해군	공			
177	고현면	차면리	104-9	104-9	답	답	130	130	130	130	남해군	공			
178	고현면	차면리	104-10	104-10	답	답	593	593	593	593	남해군	공			
179	고현면	차면리	104-11	104-11	답	답	58	58	58	58	남해군	공			
180	고현면	차면리	104-12	104-12	답	답	411	411	411	411	남해군	공			
181	고현면	차면리	104-13	104-13	답	답	88	88	88	88	남해군	공			
182	고현면	차면리	104-14	104-14	답	답	32	32	32	32	남해군	공			
183	고현면	차면리	104-15		답		121			13	국토 교통부	국			제척
184	고현면	차면리	105	105	답	답	484	299	484	299	남해군	공			
185	고현면	차면리	105-1	105-1	답	답	96	21	96	21	남해군	공			
186	고현면	차면리	105-3	105-3	답	답	10	10	10	10	남해군	공			
187	고현면	차면리	106	106	답	답	259	259	259	259	남해군	공			
188	고현면	차면리	106-1	106-1	답	답	239	239	239	239	남해군	공			
189	고현면	차면리	106-2	106-2	답	답	87	87	87	87	남해군	공			
192	고현면	차면리	808-3	808-6	구	구	40	17	17	17	기획 재정부	국			
193	고현면	차면리	812-2	812-2	구	구	750	750	750	750	기획 재정부	국			

[붙임3]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복곡 주차장	주차장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 118-13번지 일원	3,677	증)43	3,720	남해군고시 제2016-32호 (2016.5.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복곡주차장	○ 면적변경(증 43m ²) A=3,677 → 3,720m ²	○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적분할 면적오차 조정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830호

공시송달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정거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출입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통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년 1월 ~ 2019년 12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일원	L=2,180M B=10M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열람기간 : 2017. 8. 18.~2017. 9. 1.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8. 18. ~ 2017. 9. 1.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성 명	
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4 - 3	답	555			54	501	장 ○ 진	
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5	답	433			102	331	이 ○ 흥	
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8	전	112			11	101	이 ○ 근	
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02	대	195			11	184	하 ○ 수	
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7	답	13			13		장 ○ 표	
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2	전	76			48	28	장 ○ 표	
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 1	전	618			186	432	장 ○ 득	
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5	답	340			278	62	장 ○ 득	
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전	423			331	92	장 ○ 득	
1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62	답	450			15	435	김○수 외 1인 (최 ○ 선)	
1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366 - 2	답	112			112		박 ○ 관	
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50	답	292			97	195	박 ○ 남	
1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4 - 1	도	119			119		임 ○ 협	
1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4	대	18			9	9	정 ○ 문	
1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2	답	1,079			201	878	김 ○ 정	
1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1	답	700			52	648	김 ○ 정	
1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0	답	867			23	844	김 ○ 정	
1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9 - 1	도	83			79	4	손 ○ 길	
1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6 - 6	도	101			16	85	정 ○ 례	

남해군 공고 제2017 - 833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차량 총중량 제한 삭제(제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연락처 : 전화055-860-3254, 팩스055-860-3707, e-mail : lkh284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생 략> 1. <생 략> 2. <u>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u> <u>자동</u> <u>차</u> 3. <생 략>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7 - 834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9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5,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기재하고” 를 “적고” 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기재하여야” 를 “적어야”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을 “생년월일을”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해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남해군 공고 제2017 - 835호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남해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26회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민대상조례」 및 「남해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남 해 군 수

1. 시상시기 : 제26회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2017년 군민의 날 기념식)
2. 시상대상
 - 가.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노력하거나 효행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된 사람
 - 나. 농업·임업·수산업·유통업 및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다. 문화·체육·관광·환경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시상인원 : 1명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음
4. 수상자의 자격
 - 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남해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상기 시상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5. 결격자
 - 가.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후보자의 추천

가. 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

나.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함(※ 필요시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다. 추천 시 제출서류

- 추 천 서 1부(본군 소정양식)
- 공적조서 1부
- 이 력 서 1부
-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부(본군 소정양식)

라. 추천기간 : 2017. 8. 21 ~ 2017. 9. 19(30일간)

마.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남해군민대상 심사위원회(경상남도 남해군청 행정과)

7. 수상자 결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가. 수상대상자는 남해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8. 수상자의 특전 : 행정지원의 우선권 부여 등 편의 제공

9. 기타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844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남해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나.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대행점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안 제6조)

라. 가맹점 지정 제외 대상(안 제8조)

마.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92, 팩스 860-3706, e-mail : simbo6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한 영세소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남해군수가 발행하는 남해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사랑상품권”이란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남해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남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군수가 발행한다.

-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 한다.
-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1만원권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해군 일원으로 한다.

제6조(대행점 지정 및 위탁 수수료) ① 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점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탁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남해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주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남해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반하는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②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환전청구 등)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 시에 상품권의 위·변조여부를 확인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형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의 할인판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형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형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조례명)	남해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제한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존속 기한 연장	
		신설	○	강화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과 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장명정 팀장 : 심재복 담당자 : 김정아						
4. 근거법령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은 제외) ※ 군내 규제대상 현황 - 대규모점포 : 없음 - 준대규모점포 : 엘에스슈퍼(삼동 지족, 롯데마트 체인점)						
6. 규제 존속기한	조례 관계규정 존속기한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시 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없음 - 신설규제 : 남해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생략)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 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 고 주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남해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반 하는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생략)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규제사항임.

나. 본 시책은 남해군내 영세소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고, 더불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영세소상인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준대규모점포는 대도시에 소재한 대규모점포의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업소 판매대금은 본사에 입금되어 관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결과 초래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세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상품권 사용 업소를 가맹점 지정 업소로 한정

나. 가맹점 지정 대상인 영세소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내 자금 순환 으로 경제유발 효과 거양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대체수단 없음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 별도 규제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지역내 영세소상인의 매출증대와 자금의 역내 유통으로 인한 경제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대상 업소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 명확하게 규정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적정함

남해군 공고 제2017 - 845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형점에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가맹점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가맹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환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상품권 할인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92, 팩스 860-3706, e-mail : simbo65@korea.kr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수불) 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수수료) ① 군수는 「남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 수수료는 매년 말 판매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와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가맹점 지정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별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2. 조례 제9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① 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환전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점에 청구한다.
- ② 환전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품권의 할인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할인행사는 설·추석 명절일 이전 10일전부터 명절일까지의 기간 중 대행점 근무시간에 실시한다.
- ③ 상품권의 할인판매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하고 개인의 현금구매에 한하여 실시하며, 차액은 남해군에서 보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제2조 관련)

1.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1만원권						

2.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남해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p>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p>				처리기간	
				5일	

신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청 인	상 호		전화 번호	사무실			
	업 소 소재지			휴대폰			
	주 요 취급품목		할인율		%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 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지 정 번 호	남해 -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주 소			
상 호			
업 소 소재 지			
취 급 품 목			

위 업소를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남해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남해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7 - 852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해군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다. 남해군관광협회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0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전화 055-860-8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관광협회의 설립허가 등) ① 남해군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협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854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부윤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부윤천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21번지 외 26필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하천정비 L=783m, 교량설치 1개소
- 라. 공사기간 : 2016.1 ~ 2018.12.31.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21번지 외 26필지 / 17,246㎡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7. 8. 25. ~ 2017. 9. 8.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부윤천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17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총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명칭(성명)	주 소	권리내용	비고
1	창선면 수인리	55-72	답	1,729	68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59-5 ***동 ***호(인세동, 동보영구임대아파트)	이○호				

남해군 공고 제2017 - 862호

방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법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남 해 군 수

1. 예고명 : 방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법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나. 행정예고 기간 : 2017. 08. 28 ~ 2016. 09. 18(21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설치장소/대수 : 남해군 남면 임포리 520 / CCTV 3대(회전 1, 고정 2)

- 마. 촬영범위/시간 : 카메라 설치지 100M 이내 / 연중 24시간
- 바. 저장기간 : 녹화영상 30일간 저장
- 사. 운영관리 : 남해군 행정과
- 아. 설치목적 : 방법(어린이보호 포함), 산불방지, 환경감시, 교통(주·정차단속), 하천감시, 법규위반 단속 등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6. 08. 16 ~ 2016. 09. 05(21일간)
- 나. 제출(문의)처 : 남해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055 - 860 - 3131)
-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우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우 52425)
 - FAX : 055-860-3737
-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방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방법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방법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7 - 873호

남해군계획시설(오동저수지, 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오동저수지, 유원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오동저수지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4-34번지 일원
- 2) 유 원 지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오동저수지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오동저수지)
 - 명 칭 : 오동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 유원지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 명 칭 :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오동저수지 : 45,951m²
- 유 원 지 : 103,181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오동저수지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유원지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오동저수지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2) 유원지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및 상하수도사업소(☎055-860-3324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7일

제 589 호 (97)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유원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75,708	103,181					
1	삼동면 봉화리	2,101	1	전	563	563	남해군	공			
2	삼동면 봉화리	2,101	4	전	809	809	남해군	공			
3	삼동면 봉화리	2,101	6	전	203	203	남해군	공			
4	삼동면 봉화리	2,101	7	전	153	153	남해군	공			
5	삼동면 봉화리	2,102	5	전	194	194	남해군	공			
6	삼동면 봉화리	2,102	6	임	62	62	남해군	공			
7	삼동면 봉화리	2,102	7	전	357	357	남해군	공			
8	삼동면 봉화리	2,102	8	전	50	50	남해군	공			
9	삼동면 봉화리	2,102	9	전	230	230	남해군	공			
10	삼동면 봉화리	2,132	3	답	183	183	남해군	공			
11	삼동면 봉화리	2,133	0	임	340	340	남해군	공			
12	삼동면 봉화리	2,136	0	임	651	651	남해군	공			
13	삼동면 봉화리	2,136	1	과	15,659	15,659	남해군	공			
14	삼동면 봉화리	2,136	2	전	4,432	4,432	남해군	공			
15	삼동면 봉화리	2,136	3	과	2,738	2,738	남해군	공			
16	삼동면 봉화리	2,136	4	과	654	654	남해군	공			
17	삼동면 봉화리	2,136	5	대	702	702	남해군	공			
18	삼동면 봉화리	2,136	6	과	8,958	8,958	남해군	공			
19	삼동면 봉화리	2,136	7	과	4,087	4,087	남해군	공			
20	삼동면 봉화리	2,136	8	과	2,978	2,978	남해군	공			
21	삼동면 봉화리	산502	0	임	82,894	7,799	남해군	공			
22	삼동면 봉화리	산503	0	임	25,983	1,701	남해군	공			
23	삼동면 봉화리	산504	0	임	51,311	4,357	남해군	공			
24	삼동면 봉화리	산505	0	임	14,883	12,328	남해군	공			
25	삼동면 봉화리	산505	1	임	29,438	5,797	남해군	공			
26	삼동면 봉화리	산505	5	임	4,094	4,094	남해군	공			
27	삼동면 봉화리	산506	0	임	1,388	1,388	남해군	공			
28	삼동면 봉화리	산507	2	임	11,977	11,977	남해군	공			
29	삼동면 봉화리	산507	3	임	124	124	남해군	공			
30	삼동면 봉화리	산507	4	임	643	643	남해군	공			
31	삼동면 봉화리	산507	5	임	285	285	남해군	공			
32	삼동면 봉화리	산508	6	임	1,112	1,112	남해군	공			
33	삼동면 봉화리	산508	7	임	1,122	1,122	남해군	공			
34	삼동면 봉화리	산508	9	임	50	50	남해군	공			
35	삼동면 봉화리	산508	10	임	218	218	남해군	공			
36	삼동면 봉화리	산517	11	임	3,623	3,623	남해군	공			
37	삼동면 봉화리	산517	19	임	67	67	남해군	공			
38	삼동면 봉화리	산517	20	임	176	176	남해군	공			
39	삼동면 봉화리	산517	21	임	175	175	남해군	공			
40	삼동면 봉화리	산517	22	임	99	99	남해군	공			
41	삼동면 봉화리	산519	1	임	757	757	남해군	공			
42	삼동면 봉화리	산519	2	임	1,286	1,286	남해군	공			

남해군 공고 제2017 - 887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처 이관으로 변경된 사업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준공되는 시설물 사용료 등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2조제1호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 종합사업”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24조 제목 수정 및 제3항을 신설
 - 제목을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 (신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9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 2). 연락처 : 전화 055-860-3612,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지역개발팀(전화 055-860-3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 종합사업”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을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의 사용료

1. 신전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원룸형 양촌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단체 동 휴양촌	15인실	20명	200,000	200,000	200,000	5,000	5,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복층형 휴양촌	4인실	5명	100,000	130,000	130,000	10,000	10,0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6인실	7명	150,000	180,000	180,000	10,000	10,000	
	12인실	13명	25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활성화 센터	회의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물놀이 체험장			5,000	5,000	5,000			1명당 사용료

2. 강진만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갯벌생태 대학교	본관 2층	4인실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5,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본관 3층	4인실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5,000	
		10인실	15명	150,000	150,000	150,000	10,000	5,000	
	별관 1층	5인실	6명	130,000	130,000	130,000	10,000	5,000	
	별관 2층	세미나실	80명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1일 1회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기준
농 어 민 운동시설	목욕탕		1인당 월 15,000원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7일

제 589 호 (103)

3. 진동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 용 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고사리 체험관	4인실	6명	50,000	50,000	7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공동주방 (4인기준)		20,000	20,000	20,000	5,000		
	세미나실 (1일기준)	20명	100,000	100,000	100,000			
계류장			500,000					요트 1척당 1년 사용료

4. 꽃내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 용 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 센터	4인실	7명	150,000	150,000	190,000	15,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50,000	15,000	10,000		
	풋살장 (주간)		30,000	30,000	3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풋살장 (야간)		50,000	50,000	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세미나 실		100,000	100,000	100,000				숙박 시 무료
	건물전 체		1,500,000	1,500,000	1,500,000				1일 기준
동천 목욕탕	대인		4,000	4,000	4,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만3세 미만은 무료 1명당 1회 사용료	
	소인		3,000	3,000	3,000				

5. 상덕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 센터	가족실	6명	170,000	220,000	2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8인실	12명	170,000	170,000	170,000	10,000	10,0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8월)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다목적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천연잔디 운동장		100,000	100,000	100,000	1시간 추가 5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 3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천연잔디운동장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권역(구미·덕월·남구·북구) 주민들이 가족실 및 8인실을 사용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해بار리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힐링 센터	4인실(A형)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10,000	입실 14:00 익일 11:00
	4인실(B형)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10,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12인실	15명	250,000	250,000	250,000	10,000	10,000	
	강당	100명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숙박시 50% 감면
	족구장		30,000	30,000	30,000	1시간 추가 1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 3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족구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7. 북남치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 센터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6인실	8명	120,000	150,000	150,000			

8. 송정마을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대 수용정원	대학생 이하		일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 하우스	2인실		15,000	20,000	20,000	25,000	1인 1박 기준 입실 14:00 퇴실 익일 12:00 성수기 : 7~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6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8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보호자 동반 만5세 이하는 100% 감면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권역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u>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종합사업</u>을 말한다.</p> <p>2.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u>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사업</u>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4조(사용료 및 납부)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_____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_____ -----.</p> <p>2. _____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p> <p>3. <현행과 같음></p> <p>제24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u></p>